

정부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2.11.(수) 파이낸셜 뉴스, “‘사장, 나와라’ 교섭 쓰나미 코앞...‘先시행 後보완’에 불안”, “‘우리는 어떻게 노봉법 대응해야 하나요’...로펌 門 두드리는 기업들”

- 개정 노조법 先시행 後보완 형식의 속도전 속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법의 모호성에 대한 노사 모두의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
- 정부의 지침 또한 법 통과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다...교섭절차 기준을 정하는 개정령안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. 법 통과·시행에 앞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
- 경영계는 사실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무력화되면서 교섭 단위가 수십·수백 개로 쪼개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.

2. 설명 내용

<개정 노동조합법 후속 조치가 늦어진다는 주장 관련>

- 정부는 전문가, 노사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안착을 지원해나가고 있음
-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뿐만 아니라, 노동계, 경영계와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노사의 수용성을 높인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한 것으로, 다음 국무회의(2월 24일, 잠정) 시 심의·공포될 예정임
 -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은 그간의 판례 등을 기반으로 법적 정합성 등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원칙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, 지침도 행정예고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였음

- 이는 정부가 시행령, 지침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여 노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, 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현장에서 개정법이 안착될 수 있는 기반을 견고히 마련하려는 취지임
- 이와 연계하여 정부는 「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」 등을 신설·운영하여, 현장의 개별구체적 사례에서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등의 판단을 지원 하는 등 현장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임

<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주장 관련>

-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무력화되면서 교섭단위가 수십·수백 개로 쪼개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
- 우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르더라도 모든 하청근로자가 교섭단위 분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,
 -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되는 하청근로자에 한하여 교섭단위 분리의 대상이 됨
 - 만약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, 노동조합이 서로 다르다는 등의 특정 사실관계만으로 무조건 교섭단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,
 - ‘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, 이익대표의 적절성, 갈등 가능성’ 뿐만 아니라, ‘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’, ‘고용형태’, ‘교섭 관행’도 함께 고려하여,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는 것임

-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	책임자	과 장	서명석 (044-202-7611)
		담 당	서기관	유현경 (044-202-7609)
			서기관	정장석 (044-202-7615)